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발명활동 촉진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13431호)

2026. 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발명 활동 촉진 사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3
2. 출원 및 등록 비용 경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7
3. 기금의 발명 장려 사업 대상 확대	10
4. 추가적 검토사항	12
※ 참고자료	14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 부
2. 발의연월일 : 2025. 10. 1.
3. 회부연월일 : 2025.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의 촉진 대상 및 특허관리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 등으로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지식재산처장이 실시하는 발명 활동 촉진 사업 대상, ② 연구개발한 발명의 출원 및 등록 비용을 줄이기 위한 우선 조치 대상 및 ③ 기금이 사용되는 학생 발명의 장려 사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동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차별 완화를 위하여 법제처가 제안한 9개의 법률 개정안 중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법령상 불공정·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제거하는 법령 정비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음.

이하에서는 조문별 내용을 검토함.

1. 발명 활동 촉진 사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학생·여성</u>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	2. <u>학생, 학교 밖 청소년</u> (「 <u>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2호에 따른 <u>학교 밖 청소년</u> 을 말한다. 이하 같다), <u>여성</u> -----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6조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학생·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발명 활동 촉진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약자의 예시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 활동 촉진 사업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고 있음.

법령상 학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통일된 정의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

해되고, 특히 학생(學生)의 국어적 의미¹⁾나 「발명진흥법」 제27조제2항²⁾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학적 보유 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임.

한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³⁾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질병 등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제적·퇴학·자퇴, 고등학교 미진학 등에 해당되는 청소년(6세 이상 24세 이하⁴⁾)을 의미함.

개정안과 같이 발명 활동 촉진 사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게 되면 ① 학교 밖 청소년이 동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한 명확성을 제고하고, ②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기회 보장을 실현할 수 있으며, ③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 활동 참여를 독려함으로

1) 학생(學生):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는 사람, 「표준국어대사전」

2) 「발명진흥법」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② 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써 궁극적으로 개인의 발명 역량 강화 및 사회 전반적인 발명 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임.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동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의 일괄정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현행법 하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일부 발명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함.

다만 지식재산처가 2025년 실시한 발명 활동 촉진 사업을 살펴보면 주로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측면⁵⁾이 있으므로,

발명교육센터 교육지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21	'22	'23	'24	'25
학 생	489,665	459,443	411,452	407,094	493,266
교 사	7,038	7,025	6,426	7,824	7,636
학부모등	6,065	6,849	7,161	10,353	10,381
합 계	502,768	473,317	425,039	425,271	511,283

자료: 지식재산처

5) 지식재산처는 2025년 12월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4개소, 37명에게 발명교육을 지원함.
- 여성가족부의 「2023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추정 규모는 16만 7,925명임.

< 발명교육 활성화(초·중·고) 세부사업 현황 >

구분	'25년 예산	주요 사업 내용
발명교육 인프라 구축	47.34억원	전국 207개 발명교육센터에서 초·중·고 학생 발명교육 지원, <u>교육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발명체험 교실 운영</u>
발명인재 육성	20.30억원	KAIST·POSTECH과 지식재산기반 차세대 영재기업인 육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대상 창의적인 융합인재 육성
발명교육 강화	21.98억원	수업시간-발명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발명·창의력 대회	9.86억원	<u>청소년 발명페스티벌</u> , 학생발명전시회, 학생창의력챌린지대회 등
늘봄학교 발명교육 지원	5.00억원	늘봄학교 현장맞춤형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중심의 교육 등 실시
계	104.48억원	

※ 밑줄은 학교 밖 청소년도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사업임.

자료: 지식재산처

개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사업을 발굴·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출원 및 등록 비용 경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생략)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 ----- ----- 학생, 학교 밖 청소년----- ----- ----- -----.

현행법 제27조6)에 따르면 지식재산처장이 대통령령으로 학생에게 특허 출원 및 등록 비용을 경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출원·등록 비용 경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상 초·중·고등학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도 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도 출원·등록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6) 「발명진흥법」 제27조(특허관리 비용의 지원) ② 지식재산처장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현행 법령하에서도 지식재산청은 학교 밖 청소년이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출원·등록료를 감면하고 있으므로(아래 표 참조) 개정안에 따라 경감조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이 추가되더라도 수수료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통해 법률상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 활동에 참여를 보다 독려할 수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은 감면 혜택의 정도에 있어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구별하고 있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청소년의 범위는 ‘6세 이상 24세 이하’이므로,

현행 법령상 학생·청소년 대상 출원·등록비용 경감 우선조치 사항

구분	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1~3년)	연차등록료(4년차 이후)
개인, 중소기업	70% 감면	50% 감면
학생(초·중·고 재학생) 청소년(6~18세)	전액 면제	50% 감면
청년(19~29세)	85% 감면	50% 감면

자료: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법령의 해석상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의 개정에 맞춰 추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감면조치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기금의 발명 장려 사업 대상 확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생략)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③-----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u>학생</u> 발명의 장려	7. <u>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u> ----- -----
8. ~ 12. (생략)	8. ~ 12.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55조제3항제7호7)는 한국발명진흥회 학생 발명의 장려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기금의 목적인 발명 장려 사업 대상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려는 것임.

7) 「발명진흥법」 제55조(기금의 조성 등)

- ① 한국발명진흥회는 이 법에 따른 발명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발명 장려 행사 등 발명 활동의 촉진
 2. 우수 발명 시작품의 제작 지원
 3. 발명 등의 평가 지원
 4. 발명의 양도, 실시 허여와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화 지원
 5. 직무발명제도 활용 촉진
 6. 국내외 출원 및 등록의 장려
 7. 학생 발명의 장려
 8. 산업재산권의 조사·분석
 9. 산업재산권 제도 조사와 연구개발
 10. 학생, 영세 발명가에 대한 무료 변리(辦理)에 관한 지원
 11. 산업재산권의 사업화자금 지원을 할 때의 신용보증에 관한 지원
 12. 그 밖에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이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발명진흥법」상 기금 운용 근거 규정에 따라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없으나,

개정안을 통해 기금 운용을 통한 발명 진흥 사업에 관하여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한
편, 이를 토대로 한국발명진흥회로 하여금 향후 기금 운용시 학교 밖
청소년의 발명 활동 장려에 대한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추가적 검토사항

현행 「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3항제4호⁸⁾ 및 제55조제3항제10호⁹⁾에는 학생에 대한 변리서비스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문에 “학교 밖 청소년”을 별도로 추가하고 있지 않음.

①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법률상 평등하게 규정하려는 것인 점, ② 학교 밖 청소년의 대우에 관하여 하나의 법률 내 일관성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지원 등의 권리구제 제도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55조제3항제10호에도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법령의 일괄정비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9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므로(참고자료), 개정안의 논의에 있어 동일 취지의 다른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① 지식재산처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③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특수대학원의 학생은 제외한다)

9) 각주 7) 참고

문 의 처
02)6788-5458

참고

사회적 약자 차별 완화를 위한 일괄 개정 법률

	소관부처	법률	조문	내용	심사 경과
1	지식 재산처	발명진흥법	제6조제2호, 제27조제2항, 제55조제3항제7호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교육 경비 지원 대상으로 추가	소관위 계류
2	지식 재산처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2항	‘학교 밖 청소년’도 발명교육 지원 대상으로 추가	소관위 계류
3	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학교 밖 청소년’도 뿌리산업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지원 대상으로 추가	소관위 계류
4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호	‘학교 밖 청소년’도 양자과학기술 관련 교육사업 지원 대상에 추가	본회의 부의
5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1조 제1항·제2항	‘학교 밖 청소년’도 농어업 현장체험활동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 대상으로 추가 등	소관위 계류
6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학교 밖 청소년’도 농촌지역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으로 추가	소관위 계류
7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제4조제4항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 대상으로 추가	소관위 계류
8	해양수산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8조제1항 제3호	‘학교 밖 청소년’도 어촌지역에서의 학습기회 확대 정책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화	소관위 계류
9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제6호가목	교육정원의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가 포함됨을 명확화	소관위 계류

※ 심사경과는 2026.3.1. 기준